
山林法 施行令 및 同法 施行規則

改 正 案 技 萃

資料：山林廳

《改 正 理 由》

山林經營 規制緩和와 山地資源促進을 위한 山林法의 改正(1990. 1. 13, 法律 第4206號)에 따라 同法에서 委任된 營林計劃 作成期間과 林野를 매매하는 경우 買收者가 발급받아야 하는 林野賣買證明 발급대상임야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 現行規定상의 일부 未備點을補完하려는 것임.

施 行 令(案)

改 正 内 容	改 正 事 由 및 效 果
1. 營林計劃制度 改善 ○營林計劃作成期間 變更 5年→10年(案 § 8) ○營林計劃認可取消制度 新設 (案 § 12-2) - 經營實績 未達로 營林計劃 目標達成이 不可能한 境遇등	○山林經營計劃은 最小限 40-50년의 長期計劃으로 現在 5年으로 되어있는 營林計劃作成期間은 너무 짧을 뿐 아니라 5년마다 再作成에 따르는 費用등 山主負擔 輕減圖謀 ○營林計劃認可 取消規定이 없어 不實한 施業을 하고 있는 山主에게도 所得稅등 稅制上の 恵澤을 받는 矛盾을 是正하고, 營林計劃의 實效性 確保
2. 保全林地와 準保全林地의 利用原則 新設(案 § 22-2) - 保全林地는 他用途로 轉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木材를 비롯한 林產物의 自給基盤造成·自然環境保全 및 國民保健休養增進을 위하여 山林으로 保全 - 準保全林地는 產業用地開發·農林漁民의所得基盤擴充등 多目的으로 利用	○保全林地와 準保全林地의 利用原則을 정함으로써 保全林地와 準保全林地에 대한 概念을 분명히 하고 山主들에게 林野의 利用方向을 提示
3. 保全林地 他用途 轉用에 따른 替代造林費 納入除外 對象과 納入基準 新設 (案 § 24-2) ○納入除外對象 -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特定目的의 利用·開發을 위하여 山林廳長과 協業한 境遇로서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事業의 施行者	○替代造林費 納入制度는 山林資源의 減少防止를 위하여 木材生產과 山林의 公益的 機能을 擔當하고 있는 保全林地의 他用途 轉用을 抑制하고 他用途 轉用이 부득이한 경우 替代山林資源 造成費를 納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의 施行을 위한 納入基準등을 정함.

<p>- 政府의 自給支援을 받아 農地·草地를 直接造成하는 農林漁民·公共機關</p> <p>○ 納入基金 잣나무 大苗(7年生)基準 造林費, 育林費 參酌하여 每年 山林廳長이 決定·告示</p> <p>4. 林野賣買證明發給 對象林野등(案 § 109) ○ 林野賣買證明 發給對象林野 保安林·天然 保護林을 除外한 林野로서 買收하고자 하 는 面積이 2千㎡以上인 林野</p> <p>○ 林野賣買證明 發給對象에서 除外되는 者 - 國家·地方自治團體 - 土地開發公社·住宅公社等 政府投資管 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 國稅·地方稅의 滯納處分되는 林野를 取得하는 者 - 競賣法 또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하 여 強制執行되는 林野를 取得하는 者 - 公共用地의 取得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 例法에 의하여 公共事業 施行을 위하여 林野를 取得하는 者 - 債權을 辨濟받기 위하여 擔保林野를 取得하는 金融·保險機關·山林組合·山 林組合中央會</p>	<p>○ 林野投機抑制를 위한 林野賣買證明制實施 方 마 林野賣買證明 發給對象 林野등 必要한 事 項 規定</p>
--	--

施 行 規 則(案)

改 正 内 容	改 正 事 由 및 效 果
<p>1. 營林計劃作成對象 山林調整(案 § 8) - 都市計劃區域內 山林(서울特別市, 直轄市 除外), 公園區域內 山林追加 - 宅地開發豫定地區·產業基地開發區域內의 山林은 除外</p> <p>※ 現行 營林計劃作成 除外 山林 軍事目的山林·天然保護林·寺刹林·觀光林 ·公園區域·文化財保護區域·準保全林地等</p> <p>2. 山林施業 規制緩和(案 § 11) ○ 營林計劃 認可받은 山林所有者가 그 山林 내에서 어린나무가꾸기를 위한 伐採·山菜 藥草·樹實·버섯·넝쿨類의 採取등은 申 告敘이 任意로 施業</p>	<p>○ 施業制限을 받는 都市計劃區域 및 公園區域 인의 山林에 대하여 營林計劃作成함으로써 山 主의 山主所得을 保障</p> <p>○ 宅地·產業基地로 開發될 山林에 대한 2重 投資防止</p> <p>○ 營林計劃에 의한 모든 施業은 申告後 하도록 하던것을 山主便宜 圖謀위해 어린나무가꾸기 를 위한 伐採등 輕微한 施業은 任意로 하도 록 함</p>

3. 保全林地의 分割禁止 (案 § 19-2)

○保全林地는 다음의 경우를 除外하고 分割不可

- 國家·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公用·公共用·公益事業을 위하여 필요할 때
- 2人以上 共同所有山林을 處分하고자 할 때
- 債務擔保로 提共된 山林을 分割하고자 할 때
- 1筆地의 一部가 林野以外의 形象으로 土地形質이 變更된 때
- 3ha以上으로 分割하고자 할 때

4. 品種登録 버섯種菌의 生產制限

(案 § 39-2)

○버섯種菌을 開發하여 山林廳長에게 品種登録한 種菌은 15年間 다른 사람이 生產하지 못하도록 함

○林野投機抑制와 山林經營規模의 零細化 防止로 山林經營의 合理化 圖謀

○버섯種菌開發者 權益保護와 優良種菌 普及 圖謀

호도수입개방

우리나라는 '89년 4월 GATT 국제수지(BOP) 협상및 한·미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 '91년까지 3개년에 걸쳐 243품목의 농림수산물을 수입개방키로 결정됨에 따라, 이중 임산물로는 호도를 비롯한 개암, 멱갈잎, 명개잎이 포함되어 수입이 개방되게 되

었다.

특히 호도의 수입이 개방에따라 그동안 호도나무를 심고 가꾸워온 많은 조림자들의 타격이 클것으로 예상되며 금후 조림가들에게도 적정면적이 조림될 수 있도록 참고가 있어야 할것 같다.

山林開發事業進出許可

○山林廳은 資源保有國의 原木輸出 규제가 강화 확산되고 있는 國際的인 추세에 대응, 原資材의 長期安定的 공급원 확보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株) 鮮京의 말레이지아 山林開發事業 進出을 許可했다.

○山林廳에서 '90. 6. 28 許可한 내용에 의하면, (株) 鮮京은 말레이지아 사라와 크지역 現地法人과 合作(40:60)으로 2,200萬\$를 투자해서 연간 합판 10萬m³을 製造하고 그중 40%를 국내에 수입하고 60%는 제3국에 輸出하도록 했다.